####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
 2010.
 11.
 1.

 개정
 2011.
 3.
 3.

 개정
 2012.
 9.
 24.

 개정
 2013.
 8.
 21.

 개정
 2014.
 11.
 4.

 개정
 2015.
 3.
 21.

 개정
 2016.
 3.
 08.

 개정
 2018.
 9.
 6.

제정 2009. 7. 27. 개정 2009. 12. 31.

개정 2018. 12. 27. 개정 2020. 4. 10.

개정 2020. 8.28.

개정 2021. 8. 9.

개정 2021. 10. 27.

개정 2022. 9.29.

개정 2022. 12. 26.

개정 2024. 7. 2.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회계규정 제60조에 의하여 위임된 계약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계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이나 회계규정 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계약 또는 구매 책임자"라 함은 계약 또는 구매와 발주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업무 수행 상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이 아닌 직원이 계약 책임자가 될 수 있다.

- ② "계약의뢰 또는 구매요청 부서장"이라 함은 계약 책임자에게 계약 체결의뢰 또는 구매를 요청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③ "계약(당사)자"라 함은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④ "출입업자"라 함은 진흥원에 출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⑤ "물품"이라 함은 진흥원이 외부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일체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화를 말하며, 내자와 외자로 구분한다,
- ⑥ "규격"이라 함은 구매코자 하는 물품의 성능, 품질, 등급, 기술 기준 등을 말한다.
- ⑦ "검수"라 함은 물품의 성능, 기능, 품질, 기타 물품의 기술적 내용을 시험, 분석, 측정, 확인하는 검사 행위를 말한다.
- ⑧ "인수"라 함은 수량, 규격, 기타 외관으로 식별이 가능한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 하여 물품의 납품을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⑨ "내자" 라 함은 국내에서 한화로 구매하는 물품(기자재 등)을 말한다.
- ⑩ "구매"라 함은 내자의 구입, 제작, 인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조달행위를 말한다.
- ① "부대비"라 함은 구매요구서 접수시부터 진흥원에 입고되기 전까지의 비용 중 구매에 따른 부대되는 비용을 말한다.
- ② "가입고"라 함은 검수가 필요한 경우 정상적인 검수를 행할 수 없을 때 납품된 물품을 완전 포장상태로 입고 조치함을 말한다.
- ③ "기술자료"라 함은 물품 등의 제조 및 생산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 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1. 10. 27.>
- 제4조(계약의 종류) 진흥원이 외부와 체결하는 계약은 그 성질 및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진홍원이 계약대가를 부담하는 계약 : 시설공사, 영선, 용역, 임차, 내·외자구매 및 위탁연구계약 등을 말한다.
  - 2. 진흥원이 계약대가를 받는 계약 : 매각, 임대, 기술지도(기술사용계약,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계약 포함) 및 수탁연구계약 등을 말한다.
- 제5조(계약의 원칙) ①계약은 진흥원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방법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계약책임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경쟁에 부쳐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③계약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 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 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하여야 한다.
- ④계약 시에는 계약의뢰 부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품질, 규격 및 납기 등에 관한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제6조(출입업자 등록) ①계약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심사에 의하여 출입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 1. [별지 제1호] 출입업자 등록신청서
  - 2. 기타 진흥원이 요구하는 서류
  - ②출입업자 등록에 관한 효력은 계약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
  - ③등록된 출입업자에 대하여는 진흥원과 계약 체결시 제21조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 중 일부를 면할 수 있다.

#### 제2장 계약체결의뢰

- 제7조(구매요구 및 계약체결의뢰) ①계약의뢰 부서는 계약하고자 하는 구매 또는 계약체결 계획에 관하여 [별지 제2호] 구매요구서에 의거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 한후 구매 부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 ②구매요구 부서는 제1항의 구매 원인 품의의 결재를 득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반영한 후 구매 요구하여야 한다.
  - 1. 진흥원내 보유 유무 및 공동 활용의 가능성 여부
  - 2. 소요시기 및 구매우선순위의 타당성 여부
  - 3. 장비, 기기 등의 수명 및 타목적 활용여부
  - 4. 정비, 보수 및 보존 등의 가능성 여부
  - 5. 부속품 등 후속보급의 가능성 여부
  - 6. 투입될 예산과 물자활용의 성과 비교
  - 7. 추정가격에 의한 예산 확인
  - 8. 구매의 긴급 및 보안성 확인
  - ③구매요구서의 작성은 성질별 또는 유사품목별로 각각 분류한다.
  - ④제작 등 특수사항의 물품은 제작도면, 시방서, 규격 및 참고서적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추정금액 기재시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과 부대비를 포함시키고 그 내용을 명시한다.
  - ⑥반복수요가 있는 품목으로 장기보관 가능품은 저장가능성을 검토한다.
  - ⑦특수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장조건, 운반 및 검수시 취급상 유의해야 할 품목에 대하여는 취급상 유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⑧구매요구부서에서 구매물품을 지정하거나 공급자를 지정하여 특정구매 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정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사유는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안이 인

정될 수 있어야 한다.

- ⑨구매요구부서장은 구매요구서 작성시 물품의 규격작성 및 추정금액산출 등을 위하여 직접 조사할 경우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⑩인쇄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일반 인쇄물과 비밀에 관한 인쇄물을 구분하여야 한다.
- ①계약의뢰부서장은 제1항의 계약체결의뢰 원인 품의 결재를 득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반영한 후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 1. 계약명 및 계약범위
- 2. 계약기간
- 3. 당해 계약의 필요성 및 효과(용역계약의 경우)
- 4. 시방서(규격서) 및 도면(필요한 경우)
- 5. 계약대가 산정 내역
- 6. 지출예산과목
- 7. 기타 필요한 사항
- ②외국으로부터 용역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 1. 계약서(국문, 영문) 각 2통
- 2. 계약당사자의 이력 또는 경력증명서 2통(대외공관장의 확인)
- 3. 용역활동계획서
- 4. 기타 관계법령에서 요하는 사항
- ③구매·계약의뢰 시 다음 각1호 이상 다수를 충족하는 제품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
- 1. 중증장애인생산품
- 2. 녹색제품
- 3. 중소기업제품 및 창업기업제품
- 4. 자활용사촌 생산품
- 5. 여성기업제품
- 6. 사회적기업제품 및 사회적협동조합제품
- 7. 장애인기업제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제품
- 8. 혁신제품, GS인증제품 등 기술개발제품 및 시범구매제품
-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역생산품 등
- 10.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 제품
- 11. 기타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무·권장제품 등 <신설 2024. 7. 2.>
- ④구매요구 부서장은 제7조 제13항의 정부권장의무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계약부서 등이 제시하는 연간 목표에 따라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

- 제8조(계약의뢰 요구문서 제출) ①계약체결의뢰는 [별지 제2호]구매요구서나 협조전으로 할 수 있으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구매요구서로 의뢰하는 경우 : 일회성으로 특별히 금액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비성 소모품을 제외한 일상적인 경비성 소모품의 구매 시
  - 2. 협조전으로 의뢰하는 경우 : 용역계약 등
  - ②계약의뢰문서에는 제7조에 규정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 또는 포함하여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매물품의 납품 업체 및 특정기종을 지정하여 구매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특정(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5백만원 미만인 계약 또는 제37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계약인 경우 특정(수의계약)사유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1., 2022. 12. 26.> ③계약의뢰 부서는 요구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을 감안하여 계약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으나 그 단축된 기간은 시장조사 또는 계약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1. 내자구매: 기성품일 경우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30일전(단, 인쇄물의 경우에는 15일전),납품은 국내업체이나 제조가 국외업체인 물품은 60일전, 제조기간이 필요한 물품은 그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
  - 2. 외자구매 : 기성품일 경우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90일전, 제조기간이 필요한 물품은 그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
  - ④계약의뢰 부서는 계약 의뢰 대상의 예산 금액을 기재하고 산출내역 및 예산통제를 거쳐야 한다.
  - ⑤계약의뢰 또는 구매요구 부서장은 구매·계약 요청시 제7조 제13항의 제품을 우선 적으로 사용하도록 규격서, 시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며, 녹색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미구매 사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21.><개정 2024. 7. 2.>
- 제9조(계약의뢰 요구문서 접수) ①계약 부서는 계약의뢰요구문서의 적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미비점이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요구 부서와 협의하여 정정, 보완을 요구 하거나 또는 그 의견을 기재하여 반송 할 수 있다.
  - ②계약부서는 물품의 시장가격 변동이나 예산산정내역 오류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최종 계약금액이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의뢰 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의 변경이나 계약여부를 확정한 다음 처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구매요구서 접수 및 승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구매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자구매요구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 1. 기재사항의 명료, 오기 또는 기입누락 여부

- 2. 구매요구품목 및 요구일자의 적정여부
- 3. 제6조에서 정한 사항
- ②계약담당부서장은 접수된 내자구매요구서를 즉시 구매계약(주문)추진 품의서에 의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③계약담당부서장은 2천만원 미만의 물품·용역·공사에 해당하는 내자구매요구는 역 경매 방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단, 단가계약물품·법정구매제품 등은 예외로 한 다. <신설 2021. 8. 9.>

#### 제3장 예정가격

-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①계약책임자는 경쟁입찰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 협상장소 등에 두어야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제34조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의 가격 결정은 시장조사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된 예산금액 이내에서 결정한다.
- 제12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의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 제조 등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총 공사금액 또는 총 제조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계약책임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 가. 전문 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한 가격
    - 나. 당해사업자로부터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2. 법령에 의하여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가격
  - 3. 공사와 제조인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4. 조달청 공급가격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책임자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접수한 견적가격, 물가조사가격

- ②제1항 제5호의 견적가격에 의할 때에는 2개처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
- 1. 기술 또는 설비능력상 다른 경쟁업체가 없을 때
- 2. 특허품 또는 전매품일 때
- 3. 기타 관계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
- ③제1항 제5호의 물가조사 가격에 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진흥원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 직접 시장가격조사
- 2. 가격표, 참고서적에 의한 조사
- 3.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물가월보에 의한 조사
- 4. 수입물자의 시가 매수 표에 의한 조사
- ④계약책임자는 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예정가격의 기초금액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초금액과 현저히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하게 기초금액과 현저히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때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⑤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제1항 [별지4호]의 예정가격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 9. 24.>
- 제14조(원가계산서의 작성)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기준은 유사한 원가계산 사례 또는 관계법령이나 상 관례를 준용 할 수 있다.
  - ②계약 책임자는 계약 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 할 수 있다.
  - ③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예정가격에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공사, 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및 이윤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수입물품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예정 가격에는 수입 물품의 외화 표시원가 통관수수료, 관세, 보세창고료, 하역료, 국내운반비, 신용장개설수수료,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5조(예정가격의 변경) ①계약책임자는 당초의 예정가격 또는 예산금액으로는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워 그 가격을 변경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

- 여 예정가격 또는 예산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 또는 예산금액을 변경한 경우 당초의 계약절차 또는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계약책임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 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제4장 계약 방법

#### 제1절 일반경쟁계약

제16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유효한 입찰 2인 이상으로 성립한다.

- 제17조(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①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삭제 2021. 8. 9.>
  -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할 경우에는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3.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4.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을 것. 다만, 정부 기관·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비영리단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기타 계약책임자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별도로 정하는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②제1항 각 호의 사실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①계약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해당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4.>
  - 1.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3. <삭제 2015. 3. 21.>
  - 4. <삭제 2015. 3. 21.>
  - 5. <삭제 2015. 3. 21.>
  - 6. <삭제 2015. 3. 21.>
  - 7. <삭제 2015. 3. 21.>
  - 8. 제17조에서 정한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9. 진흥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진흥원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10.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증뢰한 자
- 11. 정부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자
- ② 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재취업 중인 업체도 동조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다. <조항신설 2014, 11, 4.><개정 2016, 7, 21.>
- 제19조(입찰공고) ①계약책임자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적어도 7일(긴급을 요하는 경우 5일)전까지 진흥원의 홈페이지나 지정정보처리장치(진흥원의 전자계약시스템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정정공고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8. 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2. 입찰 일시와 장소
  -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4.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사항
  - 5. 낙찰자 결정방법
  - 6. 부패행위 신고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 2014. 11. 4.>
  - ③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2. 9. 24.>
  -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2. 9. 24.>
  -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개정 2012. 9. 24.>
  -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개정 2012. 9. 24.>
- 제20조(입찰설명) 계약책임자는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입찰일 전에 미리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규격, 사양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9.>
- 제21조(입찰참가신청) ①계약책임자는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응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5호]
  - 2.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3. 기타 입찰 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 ② <삭제 2020. 8. 28.>

- 제22조(입찰방법) ①계약책임자는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소정의 입찰서(단가에 대한 입찰인 경우엔 단가를 기장한 산출내역서를 첨부)를 작성, 봉서 후 날인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②대리인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입찰서는 1인 1통이어야 한다.
  - ④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을 한 때에 제출한 신고인감이어야 한다.
- 제23조(개찰) ①계약책임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 마감을 선언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의 참석 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 ②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또는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경우에도 가격 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 제24조(낙찰자결정) ①계약책임자는 입찰서를 개봉하여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 금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 언하여야 한다.
  - ②진흥원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의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 8. 28.>
  - ③ <삭제 2020. 8. 28.>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고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0. 8. 28.>
  - ⑤진흥원의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⑥ 제24조 제2항에 따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 ⑦계약책임자는 1회 입찰로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회에 걸쳐 재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⑧계약책임자는 계약 목적이 되는 물품의 개발 및 제조의 중요도나 특성상 덤핑이나 저가 입찰로 인하여 계약의 불성실 이행이 예상되어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 단될 경우와 기타 계약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적 최저

가, 제한적 평균가 등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또는 품질 등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입찰무효) 입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경우
- 2.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3. 진흥원이 제시한 입찰 유의서에 위반된 경우
- 제26조(입찰무효의 이유표시) 계약책임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 내역서상의 금액과 입찰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진홍원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8. 9.>
- 제27조(재공고입찰) 계약책임자는 제24조 제7항의 재입찰을 실시하여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붙이고자할 때에는 제19조 제1항의 입찰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8.>

#### 제2절 제한경쟁계약

- 제28조(제한경쟁계약 집행기준)계약책임자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 경쟁에 부칠 수 있다.
  - 1. 특수한 장비, 기술 또는 공법에 의한 공사의 경우.
  - 2.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에 의한 제조의 경우
  - 3.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 구입의 경우.
  - 4.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계약의 경우
  - 5. 기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책임자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 제29조(입찰자의 제한) ①계약책임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거 제한할 수 있다.
  - 1. 공사, 제조 또는 판매실적
  - 2. 기술자 또는 장비보유상황
  - 3. 경영상태
  -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할 때에는 입

찰 공고와 함께 그 제한기준을 공고하여 입찰참가 등록을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제한기준을 미리 공고하여 당해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 등록의 신청을 받은 계약책임자는 입찰 참가 적격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당해 적격자에게 통보하고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규정) 기타 제한경쟁에 필요한 사항은 제1절 일반 경쟁 계약 사항을 준용한다.

#### 제3절 지명경쟁계약

제31조(지명경쟁계약 집행기준) 계약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 1.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2. 예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를 할 경우
- 3. 예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 4. 예정 임대·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차할 경우
-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매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 이외의 계약으로서 예정 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6. 기타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 제32조(입찰자의 지명) ①계약책임자는 제31조에 의하여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입찰에 참가할 의사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참가할 것을 승낙한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경우에 5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적어도 3인 이상의 지명수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자로 하여금 지명 경쟁 입찰참가 통지서[별지 제6호]에 의한 지명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규정) 기타 지명경쟁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경쟁계약사항을 준용한다.

#### 제4절 수의계약

- 제34조(수의계약 집행기준) ①계약책임자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의계약 에 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2. 계약의 내용을 진흥원 보안상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
-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개정 2022. 12. 26.>
- 4. 특정인의 용역, 기술,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 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나. 작업장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 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바.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
- 사. 특허품,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다만, 일정한 구격 및 내용을 제시하여 제조하게 할 수 있거나 다른 물품의 매입으로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 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 카. 특정인의 토자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이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5. 예정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예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의 계약의 경우
- 6. 법령 또는 고시에 의하여 배급 또는 가격이 등재된 물품을 매입 또는 매각 할 경우
- 7. 유가증권의 매입 또는 매각을 위탁할 경우
- 8.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 9. 기술정보자료 및 도서구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 10. 3개월 이내에 실시한 경쟁입찰에 의거 구매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입찰가격 이하로 구매하는 경우
- 1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 조하도록 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 9. 24.>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5. 3. 21.>
- 1. 진흥원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 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2. 진흥원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3. 진흥원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신설 2020. 8. 28.>
- ③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 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받아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법인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1.> <개정 2020. 8. 28.>
- ④제2항과 제3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조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3. 21.>

#### 제34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신설 2010. 11 .1.>, <개정 2012. 9. 24.>

- ①계약의 중요사항 및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27.>
-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외부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3. 21.>
- ④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5백만원 미만인 계약 또는 제37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계약인 경우 심의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4., 2013. 8. 21., 2015. 3. 21., 2018. 12. 27., 2022. 12. 26.>
- 1.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 중 제8조 제3항의 특정(수의계약)사유서를 제출한 특정 수의 계약 <개정 2021. 8. 9., 2022. 12. 26.>
- 2.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할 경우 <개정 2022. 12. 26.>
- 3. 10억원 이상의 용역발주계획 <개정 2022. 12. 26.>
- ⑤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은 비유동자산관리규칙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7.>
- ⑥계약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계약내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35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개정 2012. 9. 24>)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4>

- 1.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 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7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항신설 2012. 9. 24.>
-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조항신설 2012. 9. 24.>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2. 9. 24.>
- 제36조(종합평가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①계약책임자는 선정된 대상업체로 하여금 제안 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가격, 품질, 납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제안 또는 견적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행할 수 있다.
  -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을 행할 경우 제안서 또는 견적서의 종합 평가 기준을 제안서 또는 견적서 제출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제37조(견적서의 제출) ①계약책임자는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개처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단독 수의 계약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 1. 제34조 제1항 및 제4항,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개정 2012. 9. 24., 2022. 12. 26.>
  - 2. 계약금액이 2백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0. 11. 1., 2021. 8. 9.>
  -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 4. 2개처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거나 사실상 경쟁을 불허하는 경우
  - 5. 기타 과당경쟁이나 담합 등으로 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긴급한 사업수행 등으로 단독수의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2천만원 미만인 계약을 하는 경우 <신설 2022. 12. 260.>
  -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 1. 출입 등록 업체로서 성실히 계약을 이행 한자
  - 2. 진흥원과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성실히 계약을 이행 한자

제38조(수의계약사유에 관한 근거서류) 계약의뢰부서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 그 적용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입증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4.>
- 제39조(준용규정) 기타 수의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및 지명 경쟁계약사항을 준용한다.

#### 제5장 계약체결

- 제40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체결) ①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및 계약위반의 경우에 있어서의 보증금 처분, 지불방법, 지체상금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원장 명의로 작성되어야 한다.
  - ②계약의 성질상 계약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서 계약책임자가 인정하는 경우
  -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이에 준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5. 기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③계약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물품발주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상대자로 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징구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41조(계약변경) 계약책임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뢰부서장과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1. 공사·제조·용역계약 또는 그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계약법 제19조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른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9.>
  - 2. 공사나 제조계약에 있어서 설계 또는 기술규격의 변경으로 인하여 물품 구성내역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가. 증감된 공사나 제조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 나.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3.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당초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42조(단가계약) 계약책임자는 거래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반복 수요가 예상

되는 제조, 매매, 공급, 용역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단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가 계약 기간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20. 8, 28.>

- 제43조(장기계속계약) ①다음 각 호의 계약이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 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 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 또는 임차 계약
  - 2.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 ②제1항의 계약은 단가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 ③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 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 ④물품의 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거나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43조의1(청렴·공정계약) <신설 2010. 11. 1.><개정 2014. 11. 4.> ①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계약시 계약업무처리기준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계약체결시 [별지 제15호]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각서에는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위반시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 함되어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제18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 간을 경감할 수 없다.
  -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사항이 포함 된 공정계약 서약서가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9.>
  - 1. 계약자에 대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 2. 계약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금지
  -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 제43조의2(인권경영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계약시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의 세부 사항을 숙지시키고 이에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계약체결시 [별지 제17호]의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10.> ②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0.>
- 제43조의3(비밀유지협약) ①계약책임자는 중소기업과 용역계약시 계약자가 진흥원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협약(이하 "비밀유지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27.><개정 2022. 9. 29.>
  - 1.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협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 제18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 며 사업의 특성 및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책임자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7.>
- 제43조의4(기술자료 임치제도) ①계약책임자와 계약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권 보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 (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하며, 기술자료란 아래 각 호의 것을 의미한다. <신설 2021. 10. 27.><개정 2022. 9. 29.>
  -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신설 2022. 9. 29.>
  -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그 밖에 계약을 통한 산출물 등) <신설 2022. 9. 29.>
  - ②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다만 진홍원과 협의하여 비용 부담의 주체를 변경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7.><개정 2022. 9. 29.> ③ 그 밖에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신설 2021. 10. 27.>

#### 제6장 입찰 및 계약이행의 확보

제44조(입찰보증금) ①계약책임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과 거래관습이나 계약의 상대적 성격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제1항의 단서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관
- 2.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3. 관계 법령에서 입찰보증금의 면제자로 규정한 자
- 4. <삭제 2021. 8. 9.>
- ③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 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1., 2021. 8. 9.>
- ④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 앞 수표를 포함)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 (이하 "보증보험증권 등"이라 한다)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 2.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 3. 진흥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 특약조항이 있는 보험증권
-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 5. 기타 관련법령에서 인정하는 유가증권, 보증서 등
- ⑤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자가 보증금(입찰·계약·차액·선금·하자 보수)을 제4항의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 3. 8., 2020. 8. 28.>
- 1. 피 보증인이 당 진흥원 명의일 것.
-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3. 보증기간이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할 것.
  - 가. 입찰보증 :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 <개정 2016. 3. 8.>
  - 나. 계약·차액보증 :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까지 <개정 2016. 3. 8.>
  - 다. 하자보수보증 : 검수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까지 <개정 2020.8.28.>
  - 라. 선금 : 선금지급일 이전부터 계약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 <개정 2016. 3. 8., 2020. 8. 28.>
- 4.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자 또는 계약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

⑥계약책임자는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 담보 책임기 간을 연장하고자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⑦계약책임자는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21.> ⑧계약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8.>

제45조(계약보증금) ①계약체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낙찰자 또는 계약자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9.>

②면제에 관하여는 제44조 제2항 내지 제3항이나 제40조 제2항 각호를 준용하며,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4.> ③계약보증금의 납부 방법은 제44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46조(하자보증 및 보증금) ①계약책임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물품 검수 또는 준 공 검사 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목적물의 성질상 하자보증을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물품의 구매계약 : 물품 검수 일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하
- 2. 공사의 도급계약 : 공사의 준공 검사 일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

②계약책임자는 물품의 구매계약 및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대가의 최종 지급전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8. 28.>

③하자보증금의 납부 방법은 제44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지급이행보증) ①계약책임자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68조 규정에 의한 선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금 및 중도금의 지급이행에 대한 보증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 지급이행보증이 없을 경우에는 선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 8. 28.>

- ②납부 또는 면제에 관하여는 제44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 ③지급이행보증금의 납부 방법은 제44조 제4항을 준용한다.
- ④제1항에 따른 보증수수료는 중소기업 계약자에 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책임자가 부담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6.>
- 제48조(보증금의 귀속 및 반환) ①계약책임자는 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진흥원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의 경우로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수를 거쳐 인수한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22. 9. 29.>
  - ②계약책임자는 입찰 및 계약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동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해당 계약자로부터 반환 청구를 받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49조(지체상금) ①계약책임자는 계약자의 계약이행 지체에 대한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계약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1.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 1000분의 0.75 <개정 2020. 8. 28.>
  - 2. 시설공사 : 1000분의 0.5 <개정 2020. 8. 28.>
  -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1.25 <개정 2020. 8. 28.>
  - 4. 운송 및 보관 : 1000분의 2.5 <개정 2020. 8. 28.>
  - ②계약책임자는 지체사유가 계약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경감 할 수 있다.
  - ③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7장 구매

제50조(구매의 종류) 구매는 정상구매와 특수구매로 구분하며, 정상구매는 구매요구부서의 구매요구에 의하여 구매담당부서에서 구매하는 것을 말하고, 특수구매는 구매요구부서에서 가지급금으로 직접 현금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51조(구매의 원칙) ①구매는 정상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물품의 긴급성 또는 특수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구매를 할 수 있다.

- ②구매시에는 구매요구부서장이 요구하는 성능, 품질, 규격 및 납기 등에 관한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제52조(구매상황통보) ①계약담당부서장은 물품의 수급상황, 경제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적기구매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구매 요구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구매불능, 지연, 취소 등에 대한 여부를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 ②구매요구한 물품이 납품기일이 경과하도록 납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매요구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공급자로 하여금 신속히 납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3조(기술검토 등) ①계약담당부서장은 징구한 규격이나 조건 등이 구매요구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구매요구부서장에게 기술검토 등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②구매요구부서장은 기술 및 사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요구부서장이 책임을 진다.
  - ③인쇄물의 경우 인쇄과정(원고설명, 인쇄요령, 편집방법, 교정, 인쇄감독 등)은 인쇄 요구부서장이 행한다.
- 제54조(구매완료) 구매한 물품이 검수 등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후 구매요구부서장에게 도달된 때에 물품의 구매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제8장 납품 및 검・인수

- 제55조(계약발주) 계약발주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를 생략코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구매계약(주문) 발주서로 발주할 수 있으며 발주조건은 계약서 작성시의 주요내용 또는 상 관례에 따르되 진흥원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제56조(물품의 검수 및 인수) ①계약 부서는 계약발주 후 적정한 계약이행확보 및 그 이행완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결과를 문서 또는 [별지 제8호] 계약체결 통보서를 계약의뢰 부서로 통지하여 납품업체의 검수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계약의뢰 부서는 계약 부서로부터 통지 받은 계약내용과 계약의뢰내역과의 차이를 검토하고 계약업체의 납품에 따른 설치감독, 공동시험 및 검수 등 계약이행 사항을 신속·정확·공정하게 점검한 후 그 검수 및 인수 결과를 [별지 제9호] 검수조서를 계약 부서로 통지하고, 계약 위반사항을 발견 시 5일 이내에 문서로서 위반내용을 계약 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에 의하여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의 완료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 ③검사시행 부서에서는 필요한 경우 납품업체 또는 계약관련 부서 담당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고 자체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검사기관 또는 부서를 지정 하여 검사 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계약의뢰 부서 또는 검·인수 부서는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검수기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검수 기한을 초과지연 될 경우 담당 부서는 현재 상태의 검수결과, 지연사유 및 상세 일정을 계약부서로 통지하여 계약의 해제, 변경 또는 발주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8.>
- 제57조(검수의 시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수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며, 검수원은 검수에 임하여야 한다.
  - 1. 구매에 의하여 물품이 검수장소에 납품된 경우
  - 2. 제작, 조립, 시공, 인쇄, 용역 등의 경우로서 중간검수가 필요한 경우
  - 3. 진흥원내의 제작품이 완성되어 검수요청을 받았을 경우
  - 4. 외부기관 또는 자연인으로부터 진흥원에 기증된 물품 및 대여받은 물품이 검수장소에 도착한 경우
  - 5. 불용품, 폐품 등이 반납되어 검수요청이 있을 경우
- 제58조(검수기준문서) ①검수기준문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내자 구매계약서, 납품증비서류 등
  - 2. 제작조립, 기증, 임대차 등은 검수에 필요한 관계문서
  - ②검수규격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 이외에 별도로 작성하는 검수규격서에 의한다.
  - ③검수의뢰자는 검수장소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까지 검수기준문서를 검수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59조(검수의 갈음 등)①다음 각호와 같은 특수한 성격의 검수물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확인으로 검수에 갈음한다.
  - 1. 차량수리 및 비품수리
  - 2. 출장수리시 불가피한 사유로 현지 구매하여 사용된 수리용 자재
  - 3. 기타 보안유지상 특수한 성격의 검수물
  - ②위탁연구용역에 의하여 연구용역을 진흥원 이외의 자에게 발주하여 이를 완료하였을 경우 해당 부서장은 위탁과제 처리절차에 따라 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결과 부산물(금형 기타 유형적 부산물)을 납품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시작품 또는 부산물은 검수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 1. 공인기관의 품질검사 합격품
- 2. 전문적인 기술검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
-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검수를 생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인명, 재산 등의 안전에 관련되는 품목
- 2. 전기, 기구설비의 일부로서 시스템의 영향을 주는 물품
- 3. 기구사용료가 적용되는 기술장비
- 4. 저장조건에 따라 질량이 변하는 물품
- 5. 기타 고가품 등 검수(기술검수 포함)가 필요한 물품
- 제60조(검수기한) ①계약의뢰 부서장은 계약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개정 2012. 9. 24., 2022. 9. 28.>
  - ②계약의뢰 부서장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제1항의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계약요청 시에 계약책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61조(검수조서) ①검수원은 검수결과를 검수조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내자검수조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검수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1. 건당 10만원 이내의 구매인 경우
  - 2. 기타 구매담당부서장이 검수조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2조(검수장소) ①검수는 진흥원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 ②계약서에 물품의 인도장소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거나 출장 중 현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진흥원 외부로 검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검수장소 변경 후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3조(하자검사) ①계약의뢰부서장은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관계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행하게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따로 검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계약의뢰부서장 또는 관계자는 하자검사를 행함에 있어 특히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시정조치) ①계약책임자는 감독 또는 검수 부서에서 시행한 감독 또는 검수 결과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검사자로부터 불량품으로 판정 받은 물품에 대하여 이를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품질불량 또는 규격이나 도면과의 차이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하며, 이 경우 불량품의 처리에 따른 제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동일 물품에 대한 불합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은 계약자는 경고, 거래중지 등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

④계약자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요청 또는 결정이 계약조건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8.> ⑤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책임자에게 하여야한다. <신설 2020. 8. 28.> ⑥계약책임자는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28.>

제65조(불량품의 처리) ①계약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검수 결과 물품의 결점 또는 불량한 정도가 물품의 사용목적이나 실용성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고 물품수요의 긴급성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가조건부 합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계약책임자는 불량품 판정 결과를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내용과의 차이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66조(계약의 완료)계약은 당해 계약물이 납품되어 계약의뢰부서 또는 검수 부서에서 검·인수 및 대금 결재 등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때에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제9장 대가의 지급

제6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책임자는 진흥원의 부담이 되는 일체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고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에 의하여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완료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 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할 수 있다.

- 제68조(선금 및 중도금의 지급) ①선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20. 8. 28.>
  - 1. <삭제 2020. 8. 28.>
  - 2. 공사
    -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개정 2020. 8. 28.>
    - 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 <개정 2020. 8. 28.>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 3. 물품의 제조 및 용역
    -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개정 2020. 8. 28.>
    - 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미만인 경우: 100분의 40 <개정 2020. 8. 28.>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 4.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과의 계약
  - 5. 토지 또는 건물 임대료의 용선료
  - 6. 운임
  - 7. 기타 선금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기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8. 28.> ②선금의 한도는 제1항 각 호 및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 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8. 28.>
  - ③중도금은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 6개월 이상의 장기 개발용역 및 연구용역 대금 지급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일정율 범위 내에서 중도금 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선금과 중도금 지급액의 합계가 총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해 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8. 28.>

[제목개정 2020. 8. 28.]

- 제68조의2(하도급 대금지급) ①계약책임자는 조달청에 정보화사업 내자계약을 요청할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30일이상인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28.><개정 2022. 9. 29.>
  - ②진흥원이 직접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계약책임자는'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 조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은 진흥원이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28.>

#### 제10장 보칙

제69조(준용규정)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준하여 진흥원에 유리하게 처리하되,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0조(시행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은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부 칙(2009. 7. 27.)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31.)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1.)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3.)

이 규칙은 2011년 3월 4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2012. 9. 24.)

이 규칙은 2012년 9월 24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2013. 8. 21.)

이 규칙은 2013년 8월 2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2016. 3. 8.)

이 규칙은 2016년 3월 8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2016. 7. 21.)

이 규칙은 2016년 7월 2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7.)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10)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8. 28.)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8. 9.)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27.)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9. 29.)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26.)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출입업자등록신청서

본인(사)은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귀 진흥원의 출입업자로서 등록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 . . . .

신 청 인 (인)

첨 부:1. 업적증명 1통

- 2.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각1통
- 3.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통.
- 4. 기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 조 치 사 항

보류	기각	등록허가
<ul><li>보완서류</li><li>기 타</li></ul>	ㅇ 기각사유	<ul><li>○ 등록기간</li><li>○ 참가범위</li><li>○ 등록일자</li></ul>
계약책임자의 의견:		

결	담 당	팀 장	단 장	실(본부)장	원 장
결     재					
^1					

[별지 제2호]<개정 2009. 12. 31, 2011. 3. 4>

# 구 매 요 구 서

요 구	담	당	팀 장	단장	본뷰(실)장	원	장	예산확인	계 얀	담당	팀장	단장	실(본부)장	원	장
부									旦						
'									-1						
서									서						

ㅇ 제	목									
○요〒	2부서			ㅇ요구번호			○ 발행일지	ŀ	,	년 월 일
0 과저	] 종료일	Ľ	년 월 일	○납품장소			○ 요구접수	-일자	,	년 월 일
0 최종	S품의일자	Ų	면 월 일	○품의번호			○ 선정업지	}		
ㅇ 첨투	브문서					1				
번호	물품명세	수량	추정단가	추정금액	계정과목	자산 구분:		확정단	<u></u> 카	확정금액

추천업자 :

## 특정(수의계약)사유서

내자구매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특정하여야 함을 확인함.

결	담당		
재			

1. 구매요구부		2. 구매요구번호	
3. 계정코드		4. 구매요구일자	
5. 특정업체 (특정물품)			
6. 특정사유			

	예 정	가	격	조 시	+		
건 명							
조 사 일 자		조 사	장 소				
예 정 가 격 산 정 금 액		일금 (₩		) VAT	원정 포함		
예 정 가 격		일금 (₩		) VAT	원정 <sup>-</sup> 포함		
상기 건에 대한	해 산정된 금액고	아 예정기	·격을 다	음과 같(	기 보고드립	니다.	
산정내역 : 별	첨			٠			
						원	장
		담 당	팀 장	단 장	실(본부)장		

			입	찰	참	가	신	え	}	서			
신	상 호	호							법	인등 호	록번		
청	주 :	<u> </u>							전	화	번 호		
인	대 표 7	사											
입	입찰공고변	버호		제			호		입	찰 '	일 자		
찰	입 찰 건	명											
입	보증금역	백		일금 ₩			C C	원정 )					입찰 및
<sub>므</sub> 찰 보	보증금윭	울		입찰	날금액의	의 5/10	0 이싱	ļ.		사 용	인감	감을 대	사용할 가음과
<sup>각</sup> 증 급	입찰보증 지 급 확		흥원( 입찰!	에 낙침	할 금 <sup>9</sup> 을 현	예약 미 백에 해 금으로	당되는	소경	정의	인 감	같이		합니다.
대	본 입찰어	∥ 관	한 일	체의	권한을	을 다음	의 자이	ᅦ게	위임	심합L	니다.		
리	소 속							잔	호	버호			
인	성 명												
부		버놓		1 コノエト	며투지	ハシにシに	그이드	니니ㅈ	159	2101	OIHL	/제공[	지며1거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일반(제한, 지명)경 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진흥원에서 정한(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규격제안서 (제안가격서 포함)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법인등기부등본
- 4. 인감증명
- 5. 사용인감계
- 6. 입찰자격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법인인감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 지명경쟁입찰참가통지서

		, ,	, 0	<b>О</b> П	_ ,	<u> </u>			,		
			_귀하				2	200	년	월	일
입찰참가자	주	소	::								
	상	ই	<b>:</b>								
	대 3	표 자	· :								
우리 진흥 전명하오니 소 1. 입찰 건명 2. 현장설명	정의 경 당 : 일시 :	월차를 및 장소	필하고							서 선	정
3. 입찰일시		<sup>소</sup> 국	٥J	터	녜	ふ	ō	우	]		
		<b>그</b> 계약책		·	又	~L	<b>)</b> (인)		<u>!</u>		

# 구매계약(주문) 발주서

다음과 같이 구매계약(주문)을 발주하오니 조속히 처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팀 장	단 장	실(본부)장
결 재					

ㅇ 요구부서	○ 납품장소	
ㅇ 접수일자	ㅇ 발행일자	
○ 계약(주문)처		
ㅇ 특수조건		

NO	품명 및 규격	수량	단가	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합 계			₩

### 계약 체결 통보서

통보번호:제호 20 년 월 일 수 신: 참 조 : 계 약 명: 귀 에서 제 호(200 . . .)로 계약의뢰한 상기 계약이 다음 과 같이 체결되었음을 통보드립니다. 1. 계 약 번 호 : 2. 계약체결일자 : 3. 계 약 기 간 : 4. 계 약 금 액 : 5. 계약대상자 : 첨 부:계약서 사본 1부.

한 국 인 터 넷 진 홍 원

계약책임자: (인)

## 내자검수조서

요	담당		협조					구 담당
요 구 부 서								부 서
		1 1						
검수 번호		계약 일자			납품 일자		납기	
검=	수일				검수의건	4		
상기와	같이 검수 및 인수	-를 완료하였	음을 확인	합니다.				
번호	품명 및	규칙	수량	단기	+	금	액	예산과목
						_		

## 비밀유지각서

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_건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는 본 입찰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항이	네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향후 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
찰에서 제외되게 됨을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여	게 귀 진흥원으로부터의 어떠
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드리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서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 [별지 제11호]

## 입 찰 서

1. 입찰명 :

2. 업 체

주 소:

상 호:

대표자 : (인)

3. 입찰금액

	입 찰	금	액		확인 날인
일금				원정	
(₩				)	

20 . . .( 요일)

#### [별지 제12호]

### 입찰 참가 확인서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당사는 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상기 건명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진흥원에서 제시한 기술조건 및 기타 입찰조건을 충족지원할 수있 으므로 본 입찰에 참가코저 하오며 아울러 낙찰 후 동 조건을 충족 지원하지 못하거나 검수에 불합격할 경우 납품포기 및 계약을 해제할 것이며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계약금액의 10%) 및 손해배상금을 귀 진흥원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 며 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서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 [별지 제13호]

### 입찰 포기 각서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당사는 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상기 건명의 입찰에 대하여 당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응찰할 수 없기에 입찰을 포기코자 본 각서를 제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 입찰 설명회 참석확인서

Al all th	-1 -1 -1 -1	참석	죄이기머	
업 체 명	전화번호	직 위	성 명	확인서명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 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하지 않겠으며, 또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부패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납부하겠습니다.

-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항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제20 - 호

2. 입찰(계약)건명 :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대표이사, 이사, 감사,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의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고

상기와 같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중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수의계약)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계약)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

협력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 실천을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아래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하겠습니다.

- ※ 본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권경영헌장을 토대로 작성
- 1. 협력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출생지,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지 않겠습니다.
- 2. 협력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번영을 지향하겠습니다.
- 3.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며, 보건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4. 협력사는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 5. 협력사는 모든 경영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 6. 협력사는 해당 과제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하겠습니다.
- 7. 협력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을 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당시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협력시는 시정 요구에 따른 개선을 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비밀유지 협약서

- ○○기관 ABC(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수행전문가 XYZ(이하 "진흥원"이라 한다)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과) 진흥원이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유형2 : 진흥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 (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유형2 : 진홍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

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 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 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는다.
  -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_년 _	월 _	일			
			"계약상	·대자"		
			"'( 명 칭)_		 	
			(주 소)_		 	
		(	대표자)_		( <	인)
			"진흥원	."		
			(명 칭)_			
			(주 소)_			

(대표자)\_\_\_\_(인)